제195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 8건)

거 창 군

#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3 ~ 65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3 ~ 66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 ~ 67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3 ~ 68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	17
2013 ~ 69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	23
2013 ~ 70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13 ~ 71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	37
2013 ~ 74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3 ~ 65
------------	-----------

제출년월일	2013. 8.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별지 제2호·제4호서식)
  - (1)「지방재정법」제10조 ⇒ 「지방재정법」제13조
  -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21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
- 나.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안 제3조 ~ 제7조)
  - (1) 의 규정에 의한(의하여) ⇒ 에 따른(따라)
  - (2) 내지 ⇒ ~ 부터 ~ 까지
  - (3) 기타 ⇒ 그 밖의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3. 7. 29. ~ 2013. 8. 20.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밟아야"를 "거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한다.

제4조 제목 "채무보증의 교부"를 "채무보증서의 교부"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상이없는 것"을 "다름없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한다.

제5조 중 "제2조 내지 제4조"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한다.

제6조 중 "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을 "에 따라 분기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밟는다."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제4호서식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로 하고,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뒷면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혅 햀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0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의 시행 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 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 서류 3. 그 밖의-----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군의회---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거쳐야-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군의회---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 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 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 치를 하고 채무 보증서 발급 신청서(별 지 제3호서식)<u>에 의하여</u> 군수에게 채 --에 따라----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에 따른--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 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 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 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해당--

현 행	개 정 안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의 따른에 따른 에 따른에 따른에 따른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 <u>의 규정에 의한</u>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④ <u>에 따른</u>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u>제2</u> 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u>제</u> 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 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 에는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사유 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지방</u>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b>밟는다</b>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제2호서식]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거창 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하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u>지방</u> 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 합니다. (이하 생략)	[별지 제4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 ◎ 기본(필수) 동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채무보증 신청 업무시 군에 제출된 서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원 대상자의 본인확인, 자격 및 사후관리, 안내(SMS 등), 우편
발송 등 채무보증 관련 업무 처리시 사용
○ 그 밖에 통계처리, 학술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공된 통계자료의 형태로 정보 제공
2.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자택)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채무보증 관련 신청서 및 대장 : 채무의 원리금 상환 완료후 3년까지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채무보증 지원을 제한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선택동의 항목

<b>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b>	
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의 업무
전자적으로 전성한다 정보를 확한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담당자확인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거창군수 귀하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2013. 8.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생업지원 조항 삭제함(안 제9조)

-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2013.6.12.)됨에 따라 삭제 함
- 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의 어순을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 ⇒ 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 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 월 5만원(현행) ⇒ 월 8만원(변경)
- 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서식에 반영함(안 별지 제1호·제2호·제3호서식)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등을 고지함
  - (2)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기재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예산조치 : 700백만원(2014년도 예산 확보 계획)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6. 10. ~ 2013. 6. 30.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국가보훈기본법」"을"「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를 "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참전유공자 : 월 8만원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의 뒷면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가보훈기</u> 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국가보훈 기</u> 본법」
제2조(정의) (생 략) 1. ~ 4. (생 략) 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u>자를</u> 말한다. 6.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제9조(생업지원)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군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매점의 규모는 3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삭 제>
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로 서사람사람사람은사람은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 ◎ 기본(필수) 동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하신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의 자격확인과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         ○ 성명, 주소, 보훈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한 후 폐기처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지원신청서 접수·등록 불가.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선택동의 항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담당자확인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거창군수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지급	지급	대상자		신 청	신 청 인			지급내역	Ž
일시	성명	<u>생년월일</u>	성명	<u>생년월일</u>	주소	연락처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명예 수당		
							수당 사망 위로금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국가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0조제2항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 월 8만원

나. 전몰군경의 유족 : 월 5만원

2. 사망위로금 : 30만원

##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세출 (a)	군비	700	651	606	564	525	3,046
세입 (b)	이자 및 기타수익	0	0	0	0	0	0
총비	<del>8</del> (a-b)	700	651	606	564	525	3,046

# 3. 관련 의견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예우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장 송 재 명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2013. 8.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저소득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업무처리로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위원회 심의과정을 삭제함(안 제10조)
  - 현행: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이 매년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 ⇒ 삭제함
- 나.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융자금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함(안 제11조제3항제2호, 제12조제4항제2호)
  - 신설 : 다만,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7. 13. ~ 8. 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을 "선발"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12조제4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원대상 등) ① ~ ② (생 략) ③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이 제1항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가 운데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u>위원회의 심</u> 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11조(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등) ① ~ ② (생 략) ③ 제3조제4호의 기초생활 지원사업의기금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융자한도액은 자활공동체는 5천만원,개인은 2천만원 2.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사업자금에 대하여는 4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단서 신설>	1 2
제12조(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조제5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의기금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2.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4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단서 신설>	1 1 2

#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68

제출년월일			2013. 8.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청소년들에게 우주과학에 대한 탐구심과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월성우주창의과학관을 운영함으로써 과학문화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과학관의 업무를 정함(안 제3조)

○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과학문화 공간 제공, 우주과학지식 보급을 위한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개설·운영 등

#### 나. 과학관의 관람시간 및 휴관일을 정함(안 제4조)

- (1) 관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2) 휴관일 :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 다. 관람료 기준 및 관람료 면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별표)
- 라. 과학관의 관람제한, 변상책임,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제9조)
- 마. 과학관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제10조
-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별표
-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 18백만원 확보
-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7. 23. ~ 2013. 8. 13.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에 둔다.

제3조(업무) 과학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과학문화의 공간 제공
- 3. 우주과학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개설·운영
- 4.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의 관람 및 이용(이하 "관람"이라 한다)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과학관은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에 휴관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7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휴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료) ① 관람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③ 징수한 관람료는 별지 서식에 따라 매일 결산한다.
- **제6조(관람료 면제)**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1명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반관람자에게도 무료관람 또는 특별할인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관람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1.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 2.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 제8조(변상 책임)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과학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편의시설 설치)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운영) ①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학관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② 군수는 과학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학관의 관람료 및 체험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금 액		
구 분		개 인	단 체 (30명 이상)	비고	
관 람	어른	3,000	2,500	20세 ~ 64세	
豆豆	청소년 및 어린이	2,000	1,500	7세 ~ 19세	
	4D 체험관	3,000	3,000		
체	가변중력체험	3,000	3,000		
험료	월면걷기체험	3,000	3,000		
	무한회전체험	3,000	3,000		

# [별지 서식]

# 과학관 관람 현황 1일 보고

(단위 : 원)

구 분		금액	인 원	수입액	비고
계					
	소 계				
개인	어 른	3,000			
	청소년 및 어린이	2,000			
	소 계				
단체	어 른	2,500			
	청소년 및 어린이	1,500			
체험관	체험기구	3,000			
	소 계				
	어린이 (6세 이하)				
무료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그 밖에 (공무 등)				

#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월성 우주 창의과학관 운영, 위탁 업무, 우주과학활성화업무 수행 나. 관련 조문
  - 제10조(위탁운영) ①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학관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② 군수는 과학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장나기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국비						
세출	군비	18	190	200	200	200	808
	소계(a)	18	190	200	200	200	808
	국비						
세입	군비	_	115	140	160	180	595
	소계(b)	_	115	140	160	180	595
총비	<del>8</del> (a−b)	18	75	60	40	20	213

## 3. 관련 의견

- 과학관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지원
- 과학관 개관 후 5년 이내 수입으로 경비 90% 충당 노력, 활성화 도모

작성자 : 창조정책과장 이 상 준

###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3 ~ 69 제출연월일 2013. 8.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 라.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마. 간사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사.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아. 의견청취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 자. 수당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카. 운영세칙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31조
- 나. 예산조치 : 2천만원 2013년도 예산 확보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7. 02. ~ 7. 22.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의결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 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 4. 작성자

# 민원봉사과장 이 종 연

#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70 제출연월일 2013. 8.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도서관법령」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조직개편 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순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도서관법」개정사항 반영함(안 제1조, 제8조, 제16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1조·제22조 ⇒ 「도서관법」제27조·제28조
- 나. 도서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함(안 제2조)
  - 상림리 774번지 ⇒ 거열로6길 11
- 다. 조직개편 시항을 반영함(안 제4조·제6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
- 교육문화센터소장 ⇒ 군수, 문화관광과장
- 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영향분석결과 반영함(안 제16조)
- 단서 신설 :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
- 마. 휴관일 자유열람실 이용시간 신설 및 휴관일을 변경함(안 제4조, 제5조)
  - (1) 휴관일 자유열람실 개방시간 : 09:00 ~ 18:00
  - (2) 휴관일 : (현행)월요일⇒ (변경)금요일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6. 20. ~ 7. 10.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서관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로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이 도서관"을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상림리 774번지"를 "거열로6길 11"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라 함은 도서관 내 부속시설물"을 "란 부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거창군 교육문화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를 "군수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관일은 09:00 ~ 18:00)

제5조제1항제1호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월요일"을 "금요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소장은"을 "군수는"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중 "거창군"을 "군"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본문 중 "소장은"을 "군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 소장이"를 "그 밖에 군수가"로 한다.

####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파손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제5조 제4호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9조 중 "소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서관의 부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부속시설"로 "소장"을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판단된"을 "판단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본문 중 "소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을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설"을 "부속시설"로 "[별표]"를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을 "부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본문 중 "소장은"을 "군수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장이"를 "군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 사용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장은"을 "군수는"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함이 판명된 때"를 "해칠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함이 판명된 때"를 "사용

할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소장은"을 "군수는"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를 "「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로 "인"을 "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센터소장"을 "문화 관광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7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u>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 및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위한 <u>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한다)</u>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u>이 도서관</u> 은 거창군 거창읍 <u>상림</u> 리 774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이하 "도서 관"이라 한다)은 거창군 거창읍 <u>거열로6길 11</u> 에 둔다.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축적하는 도서 및 기록·소책자·연 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 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 한다. 4. "부속시설"라 함은 도서관 내 '다목 적실'과 '시청각실'을 말한다. 5.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내 부속시 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 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 내에 비치	어의 뜻은

현 행	개 정 안
각 호와 같다. 다만, <u>거창군 교육문화센</u> <u>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u>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 축할 수 있다. 1. 자료실: 09:00 ~ 18:00 ( <u>단</u> , 토일요일은 09:00 ~17:00)	② 도서관의 열람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u>군수가</u>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2. 자유열람실 : 09:00 ~ 22:00 <u>&lt;단서 신설&gt;</u>	2 (다만, 휴관일은 09:00 ~ 18:00)
제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제5조(휴관일) ①
각 호와 같다. 1.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u>다만</u>
2. 매주 <u>월요일</u> 3. 도서의 정리·점검 및 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 관을 할 수 있다.	
② <u>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u> 임시휴 관을 할 때에는 3일전에 휴관일시와 사 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대출) ① <u>소장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u>사람</u>
2. <u>거창군</u>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u>거창</u> <u>군</u> 소재 직장에 재직 중 이면서 도서	
관회원으로 등록된 <u>자</u> 3.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u>당해</u>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u>사람</u> 3 해당
② <u>소장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u>군수는</u>
1. ~ 5. (생 략) 6. <u>기타 소장이</u>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 군수가</u>

· 처 · 케	게 고 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도서화수 불능처리) 대출받은 회원과 가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
족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및 해외이	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
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도서화수(반납처리)가 불	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
가능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준	고, 파손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자료
거하여 제적 처리할 수 있다.	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제5조제4호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9조(기증자료) 소장은 개인 및 기관,	제9조(기증자료) 군수는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자료부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자료부
	에 등재ㆍ정리한 이후 이용자에게 열람
하게 하여야 한다.	하게 하여야 한다.
	, , , , , ,
제10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속시	제10조(사용허가) ① <u>부속시설</u>
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소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②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	1
려가 있다고 <b>판단된</b> 때	판단될
<u> </u>	 2 <u>판단될</u>
	3. 그 밖에판단될
제11조(사용시간) 소장은 제10조의 규	제11조(사용시간) 군수는 제10조에 따
	라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
	용일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와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u>시설</u> 사용 및 도서관 자료복사·자료출력의 경우 【별표】 와 같이 사용료 및 수수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그 <u>시설</u> 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u>소장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로서 소장이	1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u>시설 사용자</u> 는 사용료를 사용개시 2 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u>사용자</u>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u>군수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u> 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ol> <li>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u>해함이</u> <u>판명된 때</u></li> <li>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u>사용함이</u> <u>판명된 때</u></li> </ol>	경우
	3 <u>경우</u> ② <u>군수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제15조(입관의 제한) <u>소장은</u> 정신이상자, 전염병환자, 음주자, <u>기타</u> 도서관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u>자</u> 에 대하여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발에

현 행	개 정 안
24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 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 <u>인</u> , 부위원장 1 <u>인</u> 을 포함한 위원 10 <u>인</u> 이상 15 <u>인</u>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u>단서 신설&gt;</u>	- <u>명명</u>
<ul> <li>②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임명 또는 위촉하는 <u>자로</u> 한다.</li> <li>1. <u>문화센터소장</u></li> <li>2. 교육계 및 문화계 전문인사</li> <li>3. <u>기타</u>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자</u></li> <li>③ ~ ④ (생 략)</li> </ul>	②
제17조(실비변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출장할 때에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제18조(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마음도서 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71

제출년월일			2013. 8.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집단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 주거환경 개선과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3조)

○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한센인 정착촌의 실제 거주가구가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10세대 이상이 이주하는 경우에 지원

## 나. 지원 대상사업을 정함(안 제4조)

- (1) 한센인의 기본적 생활유지를 위한 통상적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사업
- (2) 한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권익강화 및 환경 개선사업
-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 「지방재정법」제17조
- **나. 예산조치 :** '14년도 예산 1,045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6. 24. ~ 7. 14.
  - (나) 예고결과 : 특기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집단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센인 정착촌"이란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92 부터 290까지 일원에 있는 성산마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한센인 정착촌의 실제 거주 가구가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10세대 이상이 이주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① 군수는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한센인 정착촌의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1. 한센인의 기본적 생활유지를 위한 통상적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사업
  - 2. 한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권익강화 및 환경개선사업
  -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원 대상사업(안 제4조): 한센인의 기본적 생활유지를 위한 통상적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사업, 권익강화 및 환경 개선사업 등
- 2. 비용추계의 결과

O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국 비						
세출	군 비		1,045	2,200	300		3,545
	소계(a)		1,045	2,200	300		3,545
	임대료						
세입	지방세						
	소계(b)						
총비	용(a-b)		1,045	2,200	300		3,545

작성자 : 보건소장 강 석 재

##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74

제를	출연됩	일일	2013. 8.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영관급 이상 예비역 군인, 한국전력 거창지점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확대 필요에 따라 위원 정수를 늘리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
- 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정수 확대 및 위원명칭 변경, 조직개편사항 반영함(안 제3조)
  - (1) 위원정수 확대: 15명 내 ⇒ 20명 이내
  - (2) 위원명칭 변경: 거창교육청교육장 ⇒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 (3) 재난관리과장 ⇒ 안전총괄과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제17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6. 10. ~ 6. 30.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거창군통합방위지원 본부"를 "제9조에 따라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거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통합방위 대비책 :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워 대책
-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 다. 취약지역 대비책
- 라. 통제구역 설정
-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 운용 및 지원 대책
-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제3조제1항 중 "15명 내"를 "20명 이내"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한 자로 한다."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경상남도거창교육청교육장"을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장"을 "군통합방위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통합방위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민신고태세"를 "주민신고체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제6호를 제7호·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제6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제4조제4항·제5항 중 "종합상황실"을 "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군, 읍·면지원본부"를 "통합방위지원본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제5조, <u>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거창</u>	제9조에 따라 거창군 통합방위
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거창군통합방위	협의회 및 거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
<u>지원본부</u>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2조(심의사항)</b> 거창군 통합방위협의	제2조(심의사항)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1. 통합방위 대비책 : 안보교육 및 이에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대한 지원 대책_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및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4. 통제구역 설정	<u>지원 대책</u>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
	<u>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u>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u> </u>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
	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 혅 했 개 정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 한 위원 <u>15명 내</u>로 구성하되, 의장은 -----<u>20명 이내</u>-----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u>경우</u>-----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경상남도거창교육청교육장 7.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의 이해 를 돕기 위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 결권은 없다. 1. -----안전총괄과장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재난관리과장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 · 면장 소속 하에 군, 읍 · 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군 ② 군통합방위지원본부장-----수가 되고, 읍 • 면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읍 • 면장이 된다.

# 혅 했 개 정 안 ③ 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 ③ 통합방위지원본부-----원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 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주민신고체제---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태세 확립 <신 설>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신 설>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5. 협의회에서 심의 · 의결한 사항의 시행 7.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8.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④ ------상황실--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종합상황실**은 실장과 10명 내의 ⑤ **상황실-----**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 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하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에 군, 읍·면지원본부의 조 ⑦ ----통합방위지원본부-----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